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난임의 정의에 성별 요인 포함 등〉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185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난임의 정의에 성별 요인 포함 등	3

I. 개요

1.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18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명구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2. 11.

(3) 회 부 일 : 2025. 12.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을 비롯한 유산, 사산 등 출산과 관계된 문제들은 부부 모두와 깊이 관련이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난임 등에 관한 논의에서 남성이 배제되고 여성 위주의 정책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임 등의 지원 사업에서 남성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현행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에서 출산과 양육의 주체인 남성도 동 법률의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하나,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남성의 역할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 및 ‘모자(母子)’보전법이라는 법률 제명이 주는 인상으로 인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집행이 축소될 여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난임의 정의에 ‘남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

는 난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난임 문제에서 남성의 역할을 가시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이나 유산, 사산 극복 지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부부 모두가 이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것을 규정하여, 재생산 영역에서 남성이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여성과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11조제4항 신설).

Ⅱ. 검토 의견

1. 난임의 정의에 성별 요인 포함 등

□ 개정안은 난임의 정의에서 난임 요인을 남성 요인, 여성 요인, 남성과 여성의 복합적인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난임·유산·사산 극복지원사업에 부부 모두가 참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1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1. ----- ----- -----이하 같다----- ----- -----남성 요인, 여성 요인 또는 남성과 여성의 복합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1년의-----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 ③ (생략)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에 부부 모두가 참여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현행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6년간 난임시술 시행환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4년 기준 난임시술 시행환자 수는 총 16만 1,083명임.

그 중 2024년 기준 남성 난임시술 시행환자 수는 7만 3,303명으로 2019년 대비 27.1% 증가하였고, 같은 시기 여성 난임시술 시행환자 수는 8만 7,780명, 31.9%로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6년간 난임시술 시행환자 수>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23,322	130,746	143,999	142,572	136,905	161,083
남성	56,775	60,241	65,900	64,975	61,830	73,303
여성	66,547	70,505	78,099	77,597	75,075	87,780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 저출생 통계지표』 (www.index.go.kr, 최종방문: 2026. 2. 12.)

□ 개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에 있어 남성도 적극적인 참여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자 난임의 정의에 ‘남성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난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에 부부 모두가 참여하도록 권고할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에 있어 남성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은 난임의 원인을 남성 요인, 여성 요인 또는 남성과 여성의 복합적인 요인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난임의 정의는 그 대상을 ‘부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2조제11호) 이미 난임에 남성 요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난임(難妊)”이란 <u>부부</u>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현재 난임 등 지원사업에서 남성도 대상자로 참여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등 사업의 대상자에 남성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난임 극복 지원 사업에서 남성의 포함 현황>

사업	내용	지원 대상자에 남성 포함 여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먼저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중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 구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동결·보관 비용을 지원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 등의 심 리·정서적 지원을 위하여 난임·임산부 심리상 담센터를 운영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기회 를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 해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 사 비용 지원	○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2025 모자보건사업 안내』(참고자료)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부분에서도 체외수정시술 지원 신청용 진단서의
체외수정 필요사유로 남성 요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체외수정 필요사유(체외수정시술 지원 신청용 진단서)
4. 남성 요인 ☐ 4-1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기능저하증 진단 후 24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한 경우 ☐ 4-2 정관절제술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 지속되는 난임 ☐ 4-3 정계정맥류 진단 치료 후 1년 이상 지속되는 난임 ☐ 4-4 폐쇄성 무정자증 진단 및 수술적 치료 후 지속되는 난임 ☐ 4-5 비폐쇄성 무정자증 진단 후 고환 조직 검사에서 정자가 발견된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 『2026 모자보건사업 안내』, 2026. p. 184.

☐ 안 제11조제4항은 난임·유산·사산 극복지원사업에 부부 모두가
참여하도록 권고하려는 것으로, 난임이 특정 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현행법 제2조(정의)제11호에서 이미 “난임(難妊)”의 정의를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남성과 여성 요인의 분별을 두고 있지 않음. ○남성 또는 여성 요인을 분별하는 것은 오히려 부부(남녀, 사실혼 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난임의 정의와 난임극복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500

[참고자료]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진 단 서 (체외수정시술 지원 신청용)

수진자 성명	아 내	주민등록번호		법률훈 여부	☐ 법률혼 ☐ 법률혼 아님 (사실혼)
		연락처			
	남 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난임의 원인 (다중선택 가능)		☐ 남성요인 ☐ 배란기능장애 ☐ 난소기능저하 ☐ 난관요인 ☐ 자궁요인 ☐ 자궁내막증 ☐ 원인불명(원인 불명의 경우, 다른 요인 선택 불가) ☐ 기타()			
필수검사 시행 (모두 체크)		☐ 정액검사(WHO, 2010 기준) (검사일자 : 년 월 일) ※ 정액검사 예외 ☐ 4번 남성요인 항목에 대한 비뇨기과 진단서 별도 제출한 경우 ☐ 냉동배아, 냉동정자로 시술하는 경우 (진단서 발급일자 : 20 년 월 일) ☐ 자궁 및 난관검사(검사일자 : 년 월 일) ■ 검사방법 ☐ HSG, ☐ HyCoSy, ☐ 복강경 검사 ☐ 개복수술력 ※ 난관검사 예외 ☐ 양측나팔관 폐쇄 또는 절제, 심한 유착으로 인한 나팔관 기능 부전 진단서를 제출하여 나팔관 검사 없이 자궁 검사만 실시한 경우 ☐ 난소기능 저하 등 여성원인으로 체외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남성요인(무정자 등) 난임으로 체외수정시술로만 임신할 수 있는 경우 ☐ 조영제알려지반응 등 (자궁 검사명 : , 검사일자 : 20 년 월 일) ☐ 정상 배란 유무 (검사일자 : 년 월 일) * 기타검사(☐ 진단복강경, ☐ 자궁내시경검사, ☐ 호르몬검사)			
필수검사 결과 의학적 소견 (타기관 검사포함)		① 정액 검사 ☐ 정상 ☐ 이상 ② 자궁난관 검사 ☐ 정상 ☐ 이상 ③ 배란 기능 ☐ 정상 ☐ 이상			
체외수정 필요사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 중복 선택 가능		1. 체외수정시술 이외의 난임 치료로 임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1-1 양측 난관 폐쇄 (피임시술로 인한 폐쇄 제외) ☐ 1-2 중증 자궁내막증 ☐ 1-3 난소기능저하 ☐ 1-4 착상전 유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 1-5 기타 (상세 사유 :) 2. 체외수정시술 이외 난임 치료에 의하여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 2-1 난관 성형술 기왕력 ☐ 2-2 배란 유도 기왕력 ☐ 2-3 인공 수정 기왕력 ☐ 2-4 기타 (상세 사유 :) 3. 원인 불명 난임(정액검사와 배란기능, 자궁강 및 난관 검사결과 모두 정상 소견) ☐ 3-1-1 여성연령 35세 미만이나 3년 이상 임신되지 않은 경우 ☐ 3-1-1 (단서조항) 여성연령 35세 이상이나 1년 이상 임신되지 않은 경우 4. 남성 요인 ☐ 4-1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기능저하증 진단 후 24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한 경우 ☐ 4-2 정관절제술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 지속되는 난임 ☐ 4-3 정계정맥류 진단 치료 후 1년 이상 지속되는 난임 ☐ 4-4 폐쇄성 무정자증 진단 및 수술적 치료 후 지속되는 난임 ☐ 4-5 비폐쇄성 무정자증 진단 후 고환 조직 검사에서 정자가 발견된 경우 5. 기타사유 ()			
임신시도 기간 (피임기간제외)		☐ 1년 ~2년 ☐ 2년 ~ 3년 ☐ 3년 이상			
이전 보조생식 이행 여부 (타병원 시술 포함)		☐ 있음 ☐ 인공수정()회, ☐ 체외수정()회		☐ 없음	
체외수정 시술기관 지정번호	의료 기관명			전화	
				FAX	
☐ 기존 진료받은 환자가 지원 신청을 위해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한 경우로 진단 연월일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 전문의자격번호 : 과 번 담당의사 : (서명) 기관명 : (직인) 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